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09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개별법에 대한 검토	2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피 한정후견인 부분 삭제)	2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 견인 부분 삭제)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개별법에 대한 검토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제36조(결격사유) ----- ----- ----- -.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한정후견 제도 취지를 반영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후견제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종전 한정치산자와는 성격의 차이가 있음.

[성년후견제 도입 전후 제도 비교]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피성년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피한정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따라서 종전 법에서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¹⁾

1)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363쪽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현행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여부 등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²⁾

<연구실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3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위 표 중 ‘안전 업무’는 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의미함(2023년 제2회 연구실안전관리사자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자격보유가 곧 연구실 안전 관련 업무수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구실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³⁾하는 과정에서 한정후견개시 사유⁴⁾에 따라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 내 안전관리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로 지정된 인원이 업무수행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을 연구실안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인원에게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지정과정을 통한 사전검증 및 연구실에서의 판단에 따른 업무 변경과 같은 사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획득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임.

한편 현행 제34조는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도 시험응시는 가능함.

다만, 제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그 외에는 최종합격 시키고 있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음.5)

따라서 개정안 시행 시점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진행중이라면 시험계획 공고 당시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포함되었으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2024년 제3회 연구실안전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함.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관련 내용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⁶⁾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어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의3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 ----- ---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 ----- ----- ----- ----- -----
<u>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u>	<u>가. 피성년후견인</u>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현행	개정안
<u>정후견인</u> 나. ~ 바. (생략) 2.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사항

개정안은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 있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한정후견 제도 취지를 반영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후견제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종전 한정치산자와는 성격의 차이가 있음.

[성년후견제 도입 전후 제도 비교]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피성년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피한정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따라서 종전 법에서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원등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1조의2제3항에 따르면⁷⁾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장비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사전검증),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의4에 따르면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사후검증).

이상의 검증수단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원등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더라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시행 시점에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음을 이유로 지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기간이 진행 중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문 의 처
02)6788-5227